



국토교통부

국토교통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변경에 따른 잠정조치 안내

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관련하여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58조(2018.04.25.시행)와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[별지제82호서식](2018.07.01.시행)이 시행시기가 상이하여 개정서식 시행 전까지의 잠정조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, 소속 시군구청 및 업체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자동차관리법 제58조 개정내용(점검 장면 촬영사진 첨부)과 관련하여 2018.04.25.부터 2018.06.30.까지 기존 서식을 사용하되, 차량이 점검장에 입고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해당 점검장임을 확인·특정할 수 있는 점검장 일부(상호 또는 건물 등)를 배경으로 자동차 번호판 및 차량 전체(전면?후면 각 1장)가 식별이 용이하도록 촬영하여 첨부
- 2018.07.01.이전에 교부된 기존 서식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그 유효기간(120일)의 경과 전까지 사용 가능. 끝.

국토교통부장관



수신자 서울특별시, 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인천광역시, 광주광역시, 강원도지사, 대전광역시, 충청북도지사, 울산광역시, 충청남도지사, 경기도지사, 전라북도지사, 전라남도지사, 경상북도지사, 경상남도지사, 제주특별자치도지사, 세종특별자치시,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,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,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,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,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, 전국자동차경매장협회

주무관 **박정길** 행정사무관 **홍일산** 자동차운영보험전결 04/18
과 과장 **이상일**

협조자

시행 자동차운영보험과-2140 (2018.04.18.) 접수 택시물류과-12295 (2018.4.18.)
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(어진동) 국토교통부 교 / http://www.molit.go.kr
전화 044-201-3857 /전송 044-201-5587 / pjg3100@molit.go.kr / 공개